



DU일자리센터 규정

제 정 일	2018. 4. 1
개 정 일	2022. 5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DU일자리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DU일자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취업 및 진로상담 지원 및 관리
2. 취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(개정 2019. 4. 1)
3. 취업률 통계 및 목표취업률 관리
4. 취업홍보 지원
5. 산학협동 지원 및 관리
6. 본교 내 진로·심리 및 취·창업 연계 운영 및 관리 (신설 2019. 4. 1)
7. 그 외 취업 및 산학협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

제 3조 (조직) ① 센터장은 산학취업처장으로 하며,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 4조 (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9. 4. 1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4. 센터 활동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,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9. 4. 1)

⑤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산학취업처 DU일자리센터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